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86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라 환경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위원회의 목적 변경(안 제1조)
- 나. 환경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(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, 제3조 제1항제1호)
- 다. 환경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(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항)
- 라. 환경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- 마.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제7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
- 2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(2023. 7. 27. ~ 2023. 8. 16.) 결과: 의견반영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의견반영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과 금천의제21 실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」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금천의제21”을 “환경보전 및 탄소중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”을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푸른미래도시국장”을 “문화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지속가능분과위원회”를 “정책분과위원회”로, “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”을 “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수립·변경 및 평가”로 하

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의제21분과위원회 : 금천의제21 계획 수립·실천”을 “실천분과위원회 :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”으로, “조사·연구사업, 금천그린스타트 구성·운영”을 “조사·연구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정책분과위원회,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⑦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호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분과위원회와 의제21분과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과 금천의제21 실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</u> 」 제25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</u> -----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금천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환경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2. (생략) 3. <u>금천의제21의 실천 사항과 이행 상황 점검</u> 4. <u>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심의</u> 5. (생략)	제2조(기능)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환경보전 및 탄소중립</u> ----- 4. 「 <u>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</u> 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	제3조(구성) ① -----

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 1. 당연직 위원 : <u>푸른미래도시 국장, 지역경제과장, 청소행정과장, 도시계획과장, 공원녹지과장, 교통행정과장, 치수과장, 위생과장</u> 2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</u> ----- ----- 1. ----- <u>문화환경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<u>지속가능분과위원회, 의제21분과위원회</u> 를 둔다.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지속가능분과위원회</u> :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·자문,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·자문, <u>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심의,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</u> 2. <u>의제21분과위원회</u> : <u>금천의제</u>	제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<u>정책분과위원회, 실천분과위원회</u> 를 둔다. ② ----- ----- 1. <u>정책분과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<u>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수립·변경 및 평가</u> ----- ----- 2. <u>실천분과위원회</u> : <u>환경보전</u>

21 계획 수립·실천 및 이행
 상황 점검, 녹색생활 실천을
 위한 교육·홍보와 조사·연구
 사업, 금천그린스타트 구성
 ·운영, 민간단체 및 기업 등
 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,
 환경감시활동

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
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
 내외로 구성한다.

④ ~ ⑥ (생략)
 <신설>

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 -

 ----- 조사·연구
 사업-----

③ -----

 -----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
 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
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
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
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이하정
연락처	2627 - 1506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2. 8. 1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698호, 2012. 03. 07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과 금천의제21 실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환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
2. 환경교육·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
3. 금천의제21의 실천 사항과 이행 상황 점검
4.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심의 <개정 2012.03.07>
5.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푸른미래도시국장, 지역경제과장, 청소행정과장, 도시계획과장, 공원녹지과장, 교통행정과장, 치수과장, 위생과장 <개정 2012.03.07, 2013.10.31, 2014.11.14., 2015.5.18., 2017.12.29, 2019.12.31., 2022.8.15.>
 2. 위촉위원 :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
-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과 부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구청장이 하며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03.07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(삭제) <개정 2012.03.07>

④ (삭제) <개정 2012.03.07>
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03.07>

제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지속가능분과위원회, 의제21분과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.03.07>

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속가능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·자문,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·자문,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심의,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<개정 2012.03.07>
2. 의제21분과위원회 : 금천의제21 계획 수립·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,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·홍보와 조사·연구사업, 금천그린스타트 구성·운영,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, 환경감시활동 <개정 2012.03.07>

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03.07>

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⑥ 구는 분과위원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·지원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4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2.03.07>

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결사항의 처리) 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03.07>

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03.07>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, 위원회 회의록을 정리·보관 한다.

제10조(공청회 등 개최)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, 세미나,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

제11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) 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구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·연구나 공청회·세미나·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감독)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,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제450호, 2005.12.2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74호, 2006.12.29)(행정기구 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에서 까지 생략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중 “치수과장”을 “치수방재과장”으로 한다.

부터 까지 생략

부칙(제529호, 2007.12.28)(행정기구 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...<생략>..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
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중 “청소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(제651호, 2011.01.0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98호, 2012.03.0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759호, 2013.10.31.)(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⑩ (생략)

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1호 “치수방재과장”을 “안전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(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4.11.14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⑰까지 생략

⑱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경제일자리과장”으로 한다.

⑲부터 ㉑까지 생략

부칙(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5.5.18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안전치수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(제958호,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7.12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② 생략

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경제일자리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(제1076호, 2019.12.31.) (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도시안전국장”으로 한다.

⑧부터 ㉑까지 생략

부칙(제1249호, 2022.8.15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⑦ 생략

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도시안전국장”을 “푸른미래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⑨~⑰ 생략

관계 법령

환경정책기본법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, 2016. 1. 27., 2021. 1. 5., 2021. 6. 15.>

1.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- 1의2.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
 2. 환경기준·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
 3.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·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5.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6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7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·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·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8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, 재질·구조의 개선,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
 - 8의2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
 - 8의3.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
 9. 그 밖에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연순환·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-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21. 1. 5.>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연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가기본계획, 시·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·군·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군·구 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도지사”는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본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·군·구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시·군·구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13조(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)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·정량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 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·정량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계획은 환경부장관에게, 시·군·구 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(이하 “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·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(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·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